

울산광역시 동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678호 2026. 7. 23.(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7
-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울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42
-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6

규 칙

-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50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8
-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4
-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9

발행 : 울산광역시 동구 편집 : 기획예산실(☎ 209-3047, 행정 3047)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57호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환경 개선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 사업
2. 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
3. 작가초청 강연회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행사
4. 백일장, 다독자 선발,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
6. 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 및 체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상품권 등의 종류·수량·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자료

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u>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 야한다.</u>	제4조(독서문화 진흥) ① <u>구청장은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1. <u>독서환경 개선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사업</u> 2. <u>도서관 주간, 도서관의 날,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행사</u> 3. <u>작가초청 강연회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전시·체험 행사</u> 4. <u>백일장, 다독자 선발, 독후감 경진 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u> 5. <u>독서동아리, 독서교육,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u> 6. <u>성별·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u> 7. <u>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② <u>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③ <u>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u>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삭제></u> ④ (현행과 같음) ⑤ <u>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 및 체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⑥ <u>제5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상품권 등의 종류·수량·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 ⑦ <u>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제적 또는 폐기 대상 자료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u> <u><삭제></u>
<u>제6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u> <u>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u>	

록 지원할 수 있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

2.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
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1.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사업 참가자에게 제공하는기념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구체화(안 제4조 제1항)

나. 독서문화행사 참여자에게 무상 체험 및 기념품·도서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 신설(안 제4조 제5항~제7항)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은 “책놀이터 북적북적”으로 하며,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18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복합문화공간은 책놀이터, 채움놀이터, 별별살롱, 북적온마루, 스튜디오실, 편집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 열람 및 대출 서비스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3.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 소통공간 제공
5.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복합문화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임시휴관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중 사용허가가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민의 놀이·체험·학습·소통·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공간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대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집회, 설문조사, 게시물 부착, 영리행위, 광고 등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복합문화공간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이용 중지, 퇴관 또는 회원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북적온마루	1회 (2시간)	50,000	• 기준 사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분마다 기준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 • 시설 사용은 복합문화공간 운영시간 내로 제한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한 경우 변상 • 편집실 및 스튜디오실은 초·중·고등학생 동아리 사용 시 사용료 면제
별별살롱	1회 (2시간)	30,000	
채움놀이터	1회 (2시간)	20,000	
스튜디오실	1회 (2시간)	20,000	
편집실	1회 (2시간)	20,000	

[별표 2]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 감면 기준

감면율	대 상	비 고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30%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울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비 서류	-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국가보훈등록증 - 그 밖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면제 기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별표 3]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제3항 관련)

구 분	반환 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개시 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목적										
사용일시		년 월 일 (:) ~ 년 월 일 (:)								
사용 시설명			사용인원							
장비 사용여부		빔프로젝터(), 냉·난방시설(), 마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수집항목</th> <th>수집 목적</th> <th>보유기간</th> </tr> <tr> <td>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td> <td>시설 사용 신청 및 관리</td> <td>1년</td> </tr> </table>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 신청 및 관리	1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 신청 및 관리	1년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뒷면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뒷면)

서 약 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본인(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 가.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한다.
- 나. 사용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호·유지하며,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 다. 사용기간 중 행사 관계자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서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목적				
사용시설				
사용일시		년 월 일 (:) ~ 년 월 일 (:)	사용인원	명
감면(면제)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신청 및 관리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감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단체명)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	
반환사유				
납부액				
반환청구액				
반환계좌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 및 관리		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1. 제정이유

-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복합문화공간의 목적(안 제1조)
- 나. 복합문화공간의 명칭 및 기능(안 제2조 ~ 제3조)
- 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4조)
- 라. 시설사용료 및 이용자 준수사항 등(안 제5조 ~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59호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인증된 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력관리 대상인 우수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서 우수농산물의 구입비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제4조(급식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우수농산물의 구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
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학교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교등의 명칭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 현황
3.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4. 급식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급식 업무 관계 공무원, 영양교사, 영양사 또는 조리사
 4. 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학부모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영양사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급식지원 학교등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며, 교부결정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관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의 집행 적정성 및 우수농산물의 사용 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우수농산물이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식품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정의 규정 정비 및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농산물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1호)
- 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안 제6조제4항)
- 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2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0호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보유기관(법원행정처)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확인 및 지급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보훈등록번호,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명예 수당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2]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명		참전유공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성명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포함)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1.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 처리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보유기관(법원행정처)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대상자 및 유족 확인, 지급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참전유공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부모 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본인은 해당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해당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 공무원이 정보보유기관(법원행정처)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등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 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 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 사업 수행을 위한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목적: 아동 · 청소년 법률지원
3. 재산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항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 재산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위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제2조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신청서 <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tr><td>주소</td><td></td></tr><tr><td rowspan="2">전화번호</td><td></td><td>유대전화</td></tr><tr><td></td><td></td><td></td></tr><tr><td rowspan="2">대리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r><tr><td>주소</td><td></td></tr><tr><td rowspan="2">전화번호</td><td></td><td>유대전화</td></tr><tr><td></td><td></td><td></td></tr><tr><td colspan="3">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td></tr></table> 법률지원 요청내역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당당 공무원이 정보요구 대상 기관(법령상행정처)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대전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신청서 <table><tr><td>접수번호</td><td>접수일</td><td>처리기간</td><td>10일</td></tr></table><table><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생년월일</td><td>성별</td></tr><tr><td>주소</td><td></td><td>연락처</td></tr></table><table><tr><td rowspan="2">대리인</td><td>성명</td><td>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td></tr><tr><td>생년월일</td><td></td></tr><tr><td rowspan="2">주소</td><td></td><td>연락처</td></tr></table> 법률지원 요청내역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부모 및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table><tr><td>신청인 제출서류</td><td>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td><td rowspan="2">수수료 없음</td></tr><tr><td>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td><td>양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td></tr></tabl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1.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당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당당 공무원이 정보요구 대상 기관(법령상행정처)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울산광역시 동구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자유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 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제공하 고자 합니다. 자세한 원고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 사건 수행을 위한 당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위 사건 수행을 위한 당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가망자 및 피망자인 등 재산조회 통장거래에 관한 기록에 따른 재산조회 통장거래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교육신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교육신원정보의 수집·이용 근거: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교육신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교육신원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4. 교육신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년월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 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제출서류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대전화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대전화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관계 및 대리신청 사유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제출서류	부모채무 관련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기본증명서																																																	

1. 개정이유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구비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 감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 서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민원서식 개선 및 구비서류 감축

나.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별지 민원서식개선 및 구비서류 감축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1호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구”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구”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제7조 1항에 따른 구”를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회”를 “사회로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3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그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정비하고 운영을 하도록”을 “정비·운영하도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탄소흡수원등”을 “탄소흡수원 등”으로 한다.

제18조 중 “부족 및 수질악화와”를 “부족, 수질악화 및”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와 구민 등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u>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u> 제1조(목적) ----- ----- ----- 위임된 ----- ----- ----- ----- ----- -----. <삭 제> <삭 제>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7조 1항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이를

<삭 제>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

-----.

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
----- 제7조제1항에 따른 -----
----- 기본계획-----

포함해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제40조에 따라 5년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신설>

-----.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사회로의 -----
--- 울산광역시 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
----- 사람 -----
-----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위원-----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생략)

6. 적응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

-----.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기본계획 등----- 시행-----

4. 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5.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8. (현행과 같음)

제1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

이 최소화되도록 차량을 적절히 정비하고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

----- 정비·운행하도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현행과 같음)

② -----
탄소흡수원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
----- 부족, 수질악화 및 -----

-----.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기후위
기 -----
-----.

<삭제>

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
한 공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단
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책무규정 등 상위법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중복 기재조항 삭제
(안 제2조~제4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전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2호

울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예방접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3. 백일해: 임산부 및 배우자 등 구청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대상 여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그 접종 기록을 질병 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 피해보상 안내) 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체결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 기존 개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통합·정비 및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사항 규정
- 예방접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 나. 예방접종 지원 및 지원대상(안 제3조, 제4조)
- 다. 예방접종 실시기관, 지원절차 및 피해보상 안내(안 제5조 ~ 제7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1363호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

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역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살예방사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정책 추진 및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 및 정부합동 평가 지표에 따라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제2조)

나. 자살예방 시행계획 수립 사항 규정 정비(안 제3조)

다. 자살예방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제6조)

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정비(안 제7조)

마. 자살예방사업 등의 지원 규정 정비(안 제8조)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606호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세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조사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조사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나.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감면 적용 후 추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업무
 -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한 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 또는 기장 확인 업무
 -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 출장 및 확인이나 탈세 제보자료, 과세대장·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무
3.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의 실시,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 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5.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정기선정”이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수시선정”이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정기선정 외의 방법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9. “특별세무조사”란 일반세무조사 외에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획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 등을 말한다.

10. “기획세무조사”란 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1. “긴급세무조사”란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등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 “합동조사”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3. “직접조사”란 납세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4. “서면조사”란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부터 장부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 “통합조사”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세목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7. “부분조사”란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사업장·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선정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시선정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무정보자료 수집, 현지확인 등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세무조사 유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울산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

4.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받은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중복조사 금지)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착수 후 중복조사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세무조사 계획의 수립 및 준비

제12조(연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세무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3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에 따른 일반세무조사 또는 긴급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 업종, 규모, 납세이력, 사업현황 및 과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②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 환경, 업종별·지역별 특성, 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직접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에는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접조사와 서면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범위) ①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기간) ①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기간·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최소한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17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조사 시작일 2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3조제6항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사전통지 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은닉·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전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회피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세무조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연기 사유와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 조사개시 전까지 그결과(연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을 포함한다)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조사개시 5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세무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제4장 세무조사 진행

제19조(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에게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며,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자권리현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현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사적 이해관계 신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조사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의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21조(도움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대리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의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직접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자의 권익보호) 조사책임자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가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세무조사 실시)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장소, 장부 등의 검사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을 조사할 때에는 그 영업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효율적인 실시 및 조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회계장부 또는 관계서류 등의 일부를 사본으로 제출받아 조사관청에서 검토할 수 있다.

제24조(조사장소) ①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청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적합한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시간)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상대로 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대상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여러 과세기간(사업연도 또는 과세연도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조사 범위 확대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7조(해명 요구 등)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중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불복청구 등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관련인 등으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제28조(거래상대방의 조사) 구청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거래처 또는 관련인 등(이하 “거래상대방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제29조(금융거래 등의 확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지방세 탈루 혐의를 확인할 목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하 “금융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관련인(이하 “조사대상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거래정보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등의 조회대상 금융거래 또는 조회계좌 등의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특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 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30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장부 등을 파기·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범칙사건조사의 실시,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법 제

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세무조사의 종결

제31조(조사의 종결)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조사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법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과세정보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해야 한다.

제33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
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
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34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구청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폐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집행을 위해 조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수칙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 법 인 명 : (인)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팩스) ○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조업 () 건설업 () 판매업 () 운송업 () 기 타 ()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귀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수령장소	※ 교부장소가 조사관청인 경우 사유 기재		

귀 청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받았으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권리보호 업무와 절차 등에 대해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청렴서약서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사업장)			

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부터 종결 후에도 금품·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 편의를 제공·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불이익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 서약서를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서명 또는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위임장

대 리 인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격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주소(사업장)			

연번	소속	직위/직책	성명	생년월일	자격

※ 별지 작성 가능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생 년 월 일 :
 대 표 자(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참여 또는 의견진술을 위하여 이 위임장을 조사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수신

(경유)

제 목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구 분	당 초	범 위 확 대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	
조사 기간	~	
기타 사항		
조사범위 확대사유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끝.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및 실제 조사 운영여건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위해 형식과 용어, 조사사무 절차 규정 등 현행 규칙 전반에 대하여 정비·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무조사 관련 정의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 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안 제5조~제6조)
- 다.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반영(안 제14조)
- 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안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 마. 세무조사 절차 투명화 및 명확화 정비(안 제19조~제29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소의 진료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업무의 대행 및 대행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다. 업무대행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업무대행 비용의 지급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3. 조례 제정안: 【붙임1】

4. 근거법규: 【붙임2】

- 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나.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담당부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 1) 주소: (044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2) 팩스번호: 052-209-4079
- 3) 전자우편(E-mail): haiho98@korea.kr

6.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2-209-4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www.donggu.ulsan.kr>)
〔동구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대행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대행)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 질환 등 질병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등) ①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대행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4조(업무대행계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5.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 비용)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6.>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배치)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꽃바위작은도서관 휴관일 변경에 따라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작은도서관 휴관일 조정 규정을 신설(안 제3조 제3항)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

3.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교육정책과)

- 팩 스: 052-209-3209

- 전자우편: mini505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052-209-4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립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를 “도서관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로, “때”를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를 “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시와 그 사유를 7일 전까지”로, 같은 항 단서 중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휴관일) ① <u>공립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u> 1. <u>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u> 2. <u>임시휴관일: 도서관의 정리,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u> ② <u>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로 정한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u><신 설></u>	제3조(휴관일) ① ----- --<u>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u> 2. -----<u>도서관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u> ----- -----<u>날</u> ② <u>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7일 전까지 ----- -----<u>사유</u>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u>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수정 및 개선 권고 사항임
-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중 운영자의 귀책사유는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귀책사유만 규정하고 있어 운영자 및 이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변경(별표 3)
-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

3.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1]

4. 근거법률: [붙임 2]

○ 「소비자기본법」 제25조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 주 소: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교육정책과)

- 팩 스: 052-209-3209

- 전자우편: mini505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052-209-4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gu.ulsan.kr>) [동구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 건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붙임 1】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을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가”를 “구청장은”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등으로 도서관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및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를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인의 의사로 수강 및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를 “이용자가 수강 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표 3】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
도서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사용하지 못한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학습기간 1개월 미만	수업시작 전	전액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수업시간의 1/3 ~ 1/2	수강료의 1/2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기간 1개월 이상	수업시작 전	전액
		수업시작 후	사유 발생한 달의 반환금 정산액과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발생	반환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사용하지 못한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전액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반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 ① <u>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1. <u>천재지변 등으로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2. <u>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 및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u> 3. <u>본인의 의사로 수강 및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u>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u>제출하여야 한다.</u>	제16조(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u>구청장은 -----</u> ----- ----- <u>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u> 1. <u>천재지변 등으로 도서관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 2. <u>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 운영 또는 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u> 3. <u>이용자가 수강 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u> ② ----- ----- ----- ----- <u>제출해야 -----.</u>

현행	개정안
----	-----

【별표 3】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기 준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
운영 중단 등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수강료를 수업 횟수단위로 계산한 금액
(생략)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취소사유 발생	반환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 사용료를 사용 횟수 단위로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	전액
	사용 예정일 2일 전 ~ 사용 예정일 전일	사용료의 1/2

【별표 3】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6조 관련)

1.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
도서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사용하지 못한 수업 횟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현행과 같음)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	반환금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사용하지 못한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전액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 시작 전	납부한 시설 사용료 전액
	사용 시작 후	사용하지 않은 기간(또는 횟수)에 해당하는 시설 사용료 반환

【붙임 3】 근거법규

□ 「소비자기본법」 제25조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1.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수립·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2.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위원회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예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③ 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⑤ 정책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⑥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⑦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